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7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	3

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3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7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52조(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 (개정 2012. 6. 29) 1. 영 제88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개정 2012. 6. 29)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(해당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)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6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8 >

Yeosu Web Contents

